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296회 임시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원발의】

검토보고서



2023. 4.

경제도시위원회 전문위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3. 4.

경제도시위원회

1. 검토과정

- 안건명: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발의자: 김기열 의원 등 5명(장호섭, 김장관, 황국주, 서민우)
- 발의일자: 2023. 4. 7.
- 회부일자: 2023. 4. 7.
- 검토기간: 2023. 4. 7. ~ 4. 11.(5일간)

2. 제안이유

-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과 생태계 조성에 현저한 기여가 있는 기업·단체 등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용어의 정비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사회적경제 조직에 대한 용어 정의 신설(안 제3조제8호)
- 사회적경제위원회 관련사항 중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규정하고 있는 중복조항 삭제 및 준용 근거 마련(제23조 삭제, 제25조제4항~제5항 삭제, 제26조 삭제, 안 제24조)
- 위촉직 위원의 연임 규정 마련(제22조 삭제, 안 제24조)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민간위탁 시 준용근거 신설(안 제27조제4항)
- 사회적경제 관련 유공자 표창근거 신설(안 제29조)
- 띠어쓰기 및 용어 정비

4. 참고사항

- 개정조례안: 붙임
- 관계법령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제2조
 -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제2조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제7조~제8조, 제15조
 -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비용추계: 미첨부 대상
- 입법예고(2023. 4. 7. ~ 2023. 4. 17.)결과: 의견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과 생태계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용어의 정비 및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조례안으로
-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 안 제3조, 안 제13조, 안 제25조에서 용어의 정비와 더불어 “사회적경제 조직”을 추가 정의 하였고,
 - 안 제8조제1항에서는 사회적경제 종합발전 시행계획 수립·시행을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 안 제21조 및 안 제24조에서는 사회적경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하여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할 수 있으므로 내용을 일부 수정 하였고,
 - 현행조례 제22조, 제23조, 제25조, 제26조, 위원의 임기, 위원의 해임 및 위촉해제, 위원회 운영, 위원 수당 규정은 「대구광역시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삭제 하였으며,
 - 안 제27조에서는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위탁 시 「대구광역시 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 하였으며,

- 안 제29조를 신설하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표창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음.
-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용어 정비와 더불어 타 조례에서 준용이 가능하거나 중복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을 일부 수정 또는 삭제하였고, 조례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공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조례를 개선·보완함으로써 사회적 경제 육성 및 지원과 생태계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되며, 관련법령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사회적경제 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를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를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로 하고, 같은 호 다목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호 라목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중간지원조직”을 “중간지원 조직”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직을 말한다.

제8조제1항 중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획을 수립·시행”을 “수립”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중 “사회적경제 기업”을 “사회적경제기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지방공기업법」 제76조”를 “「지방공기업법」 제76조”로 한다.

제21조제1항 중 “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야 한다”를 “구성한다”로 한다. 제22조 및 제23조를 각각 삭제하고, 제24조 및 제25조를 각각 제22조 및 제23조로 한다.

제23조(종전의 제25조)의 제목 “(위원회 운영)”을 “(위원회 운영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27조를 제24조로 한다.

제24조(종전의 제27조)의 제목 “(운영세칙)”을 “(준용)”으로 하고, 같은 조 중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를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로 한다.

제26조를 삭제한다.

제28조 앞에 “제4장 통합지원체계 구축”을 삭제한다.

제2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통합지원체계 구축

제28조부터 제30조까지를 각각 제25조부터 제27조까지로 한다.

제25조(종전의 제28조) 중 “중간지원조직”을 “중간지원 조직”으로 한다.

제26조(종전의 제29조) 제4호 및 제5호 중 “사회적경제조직”을 각각 “사회적 경제 조직”으로 한다.

제27조(종전의 제30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 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제31조 및 제32조를 각각 제28조 및 제30조로 한다.

제2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표창)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기관·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정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사회적경제 기업” 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3. <u>“사회적경제기업”</u> ----- ----- -----.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과 대구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u>제2조제1호</u> ----- ----- ----- -----.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제84조, 제106조, 제114조에 따라 각각 설립 등기를 마친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61조----- ----- ----- ----- -----.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장이 지정한 마을기업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 ----- ----- ----- ---

<p>라. 「<u>국민기초생활보장법</u>」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4. (생 략) 5. “사회적경제 민간네트워크” 란 사회적경제 당사자 연합체, 사회적경제를 지원하는 <u>중간</u> <u>지원조직</u> 및 민간기업·단체 들이 공동사업, 상호부조나 상 호거래를 추진하는 조직 또는 관계망을 말한다. 6. · 7. (생 략) <u><신 설></u></p>	<p>라. 「<u>국민기초생활 보장법</u>」 제18조----- 4. (현행과 같음) 5. ----- ----- ----- <u>중간</u> <u>지원 조직</u> ----- ----- ----- -----. 6. · 7. (현행과 같음) 8. “사회적경제 조직”이란 제3 <u>호부터 제5호까지의 조직을</u> <u>말한다.</u></p>
<p>제8조(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① 구청장은 사회적경제활성화 를 통하여 지역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 기 위하여 지역특성에 적합한 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 다 수립하고 그에 따른 시행계 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 ④ (생 략)</p>	<p>제8조(사회적경제 종합발전계획) ① ----- ----- ----- ----- ----- ----- ----- ----- -- <u>수립</u>----- -----. 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13조(우선구매 촉진) ① 구청장은 관련 법규에 따라 <u>사회적경제 기업</u>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개척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 3. (생략)</p> <p>4. 「지방공기업법」 제76조에 따라 구에서 설립한 공단</p>	<p>제13조(우선구매 촉진) ① ----- ----- 사회적경제 제기업 ----- ----- -----. ② ----- ----- -----.</p> <p>1. ~ 3. (현행과 같음) 4. 「지방공기업법」 제76조-- -----.</p>
<p>제21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15명 이하로 <u>구성하되, 성별을 고려하여</u>야 한다.</p> <p>② ~ ④ (생략)</p>	<p>제21조(위원회 구성) ① ----- ----- ----- -- <u>구성한다.</u></p> <p>② ~ ④ (현행과 같음)</p>
<p>제22조(위원회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p> <p>[기존 제17조에서 이동 2020. 12. 31.]</p>	<p><삭 제></p>
<p>제23조(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구청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p>	<p><삭 제></p>

<p><u>1.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및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 할 수 없게 된 경우</u></p> <p><u>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u></p> <p><u>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p><u>4. 위원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u></p> <p>[기존 제18조에서 이동, 기존 제23조는 제28조로 이동 2020. 12. 31.]</p>	
<p><u>제24조 (생 략)</u></p> <p><u>제25조(위원회 운영) ① ~ ③(생 략)</u></p> <p><u>④ 위원 중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u></p> <p><u>⑤ 위원은 심의위원회의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기존 제20조에서 이동, 기존 제25조는 제30조로 이동 2020. 12. 31.]</p>	<p><u>제22조 (현행 제24조와 같음)</u></p> <p><u>제23조(위원회 운영 등) ① ~ ③</u></p> <p>(현행과 같음)</p> <p><삭 제></p> <p><삭 제></p>

<p><u>제26조(위원 수당) 위원회에 출석</u></p> <p>한 위원 등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p> <p>[기존 제21조에서 이동, 기존 제26조는 제31조로 이동 2020. 12. 31.]</p>	<p><삭 제></p>
<p><u>제27조(운영세칙)</u>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p>	<p><u>제24조(준용)</u> ----- ----- --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p>
<p><u>제4장 통합지원체계 구축</u></p> <p><신 설></p>	<p><삭 제></p> <p><u>제4장 통합지원체계 구축</u></p>
<p><u>제28조(통합지원체계 구축)</u> 구청장은 지역공동체 활성화와 각 분야별 협력과 연대에 의한 상승효과 창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회적경제, 마을만들기 등 <u>중간지원조직</u>을 통합하는 달서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 할 수 있다.</p>	<p><u>제25조(통합지원체계 구축)</u> ----- ----- ----- ----- ----- <u>중간지원 조직</u>----- ----- ----- -----.</p>

<p><u>제29조(지원센터의 기능)</u>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 3. (생 략)</p> <p>4. <u>사회적경제조직</u> 간의 협력 지원 및 업종, 지역 및 광역단위 네트워크 구축 · 운영지원</p> <p>5. <u>사회적경제조직</u> 컨설팅 · 모델 발굴 · 사업화 지원 및 모니터링 · 평가</p> <p>6. ~ 9. (생 략)</p>	<p><u>제26조(지원센터의 기능)</u> -----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u>사회적경제 조직</u> ----- ----- -----</p> <p>5. <u>사회적경제 조직</u> ----- ----- -----</p> <p>6. ~ 9. (현행과 같음)</p>
<p><u>제30조(위탁관리 및 운영)</u> ① ~ ③ (생 략)</p> <p><u><신 설></u></p>	<p><u>제27조(위탁관리 및 운영)</u>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위탁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대구광역시달서구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p>
<p><u>제31조 (생 략)</u></p> <p><u><신 설></u></p>	<p><u>제28조 (현행 제31조와 같음)</u></p> <p><u>제29조(표창)</u> 구청장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회적경제기업 ·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에게 「대구광역시달서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p>
<p><u>제32조 (생 략)</u></p>	<p><u>제30조 (현행 제32조와 같음)</u></p>

[관계법령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지침을 통보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

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2. “취약계층”이란 자신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를 시장가격으로 구매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거나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계층을 말하며, 그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회서비스”란 교육, 보건, 사회복지, 환경 및 문화 분야의 서비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비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의 서비스를 말한다.
4. “연계기업”이란 특정한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 지원, 경영 자문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기업으로서 그 사회적기업과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5. “연계지방자치단체”란 지역주민을 위한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특정한 사회적기업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 협동조합 기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협동조합의 설립·운영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주적·자립적·자치적인 협동조합 활동을 촉진하고, 사회통합과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생산·판매·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 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2. “협동조합연합회”란 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1호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3. “사회적협동조합”이란 제1호의 협동조합 중 지역주민들의 권리·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협동조합을 말한다.

4.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란 사회적협동조합의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호에 따라 설립된 사회적협동조합의 연합회를 말한다.
5. “이종(異種)협동조합연합회”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협동조합이 공동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립한 연합회를 말한다.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2. 26., 2018. 4. 17., 2019. 8. 27., 2020. 1. 29., 2021. 7. 20.>

1.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
2.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이란 도시재생을 종합적·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국가 도시재생전략을 말한다.
3. “도시재생전략계획”이란 전략계획수립권자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고려하여 도시 전체 또는 일부 지역, 필요한 경우 둘 이상의 도시에 대하여 도시재생과 관련한 각종 계획, 사업, 프로그램, 유형·무형의 지역자산 등을 조사·발굴하고,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을 지정하는 등 도시재생 추진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계획을 말한다.
4. “전략계획수립권자”란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의 군수는 제외 한다)를 말한다.
5.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자원과 역량을 집중함으로써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는 전략적

대상지역으로 그 지정 및 해제를 도시재생전략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6.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이란 도시재생전략계획에 부합하도록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지역주민 등이 지역발전과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을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수립하는 실행계획을 말하며, 주요 목적 및 성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유형으로 구분한다.

가.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산업단지, 항만, 공항, 철도, 일반국도, 하천 등 국가의 핵심적인 기능을 담당하는 도시·군계획시설의 정비 및 개발과 연계하여 도시에 새로운 기능을 부여하고 고용기반을 창출하기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나. 근린재생형 활성화계획: 생활권 단위의 생활환경 개선, 기초생활 인프라 확충, 공동체 활성화, 골목경제 살리기 등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6의2. “도시재생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란 도시재생을 촉진하기 위하여 산업·상업·주거·복지·행정 등의 기능이 집적된 지역 거점을 우선적으로 조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 이 법에 따라 지정·고시되는 지구를 말한다.

6의3. “주거재생혁신지구”란 혁신지구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구를 말한다.

가. 빈집, 노후·불량건축물 등이 밀집하여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일 것

나. 신규 주택공급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지구의 면적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 이내일 것

7. “도시재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어느 하나의 사업

- 1) 국가 차원에서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2)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발전 및 도시재생을 위하여 추진하는 일련의 사업
 - 3)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사회적·인적 자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
 -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재정비촉진사업
 - 5)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역세권개발사업
 - 6)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재생사업
 - 7)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항만재개발사업
 - 8)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권활성화 사업 및 시장정비사업
 -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군계획시설사업 및 시범도시(시범지구 및 시범단지를 포함한다) 지정에 따른 사업
 - 10) 「경관법」에 따른 경관사업
 - 1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정비 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 12)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13)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에 관한 사업
 - 14) 그 밖에 도시재생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 나. 혁신지구에서 혁신지구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
(이하 “혁신지구재생사업”이라 한다)
- 다. 도시재생전략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제26조의2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지역과 연계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업(이하 “도시재생 인정사업”이라 한다)

8. “도시재생선도지역”이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고 주변지역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지역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을 중점 시행함으로써 도시재생 활성화를 도모하는 지역을 말한다.

8의2. “특별재생지역”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 피해지역의 주택 및 기반시설 등 정비, 재난 예방 및 대응, 피해지역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도시재생을 긴급하고 효과적으로 실시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9. “마을기업”이란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해당 지역의 인력, 향토, 문화, 자연자원 등 각종 자원을 활용하여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며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운영하는 기업을 말한다.

10. “도시재생기반시설”이란 다음 각 목의 시설을 말한다.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기반시설
나.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놀이터, 마을회관, 공동작업장, 마을도서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동이용시설

11. “기초생활인프라”란 도시재생기반시설 중 도시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삶의 질을 일정한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말한다.

12. “상생협약”이란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지역주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의 대상이 되는 상가건물의 임대인과 임차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지역 활성화와 상호이익 증진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을 말한다.

② 이 법에서 따로 정의하지 아니한 용어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달서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제6조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위촉하고, 당연직 위원의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 구청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 11. 23.)

② 위촉직 위원을 구성하는 경우에는 사회적 약자의 참여가 보장되도록 노력하되,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대구광역시달서구 구정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7. 31., 2020. 11. 23., 2021. 7. 12.)

③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촉직 위원 중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3분의 1을 넘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7. 12.)

④ 구청장은 같은 사람이 4개 이상의 위원회에 중복으로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5. 7. 31, 2020. 11. 23)

1. 공무원, 구의원, 특수전문분야 전문가를 위촉하는 경우
2. 제2항에 따라 위촉직 위원의 성별 비율을 맞추기 위해 특정성별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3. 특정한 안건을 처리하고 해산되는 위원회의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⑤ 위원장은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원 중에서 호선 한다. (개정 2021. 7. 12.)

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2021. 7. 12.)

⑦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신설 2021. 7. 12.)

제7조(청렴서약서 작성) 위원은 위촉 또는 임명됨과 동시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청렴서약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위원의 제척 · 기피 · 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 · 의결에서 제척된다. 다만, 관계법령에 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11. 23., 2021. 7. 12.)

1. 위원 또는 배우자가 해당 안건의 당사자(당사자가 법인 · 단체 등인 경우에는 그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 · 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안건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이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②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 의결 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위원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1. 23., 2021. 7. 12.)

[본조신설 2015. 7. 31.]

[제목개정 2020. 11. 23.]

제8조(위원의 해촉)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삭제 (2020. 11. 23.)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또는 6개월 이상 장기 해외여행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개정 2020. 11. 23.)
3.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한 경우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 또는 이득을 취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6.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

② 구청장은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에는 해촉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15조(수당 등) 구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와 같이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7. 31)

1.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따라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2. 위원장으로부터 지명을 받아 미리 안건을 검토하여 위원회에 보고한 위원에게는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3.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하면 4급 지방공무원에 해당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